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5
------	-----

2019. 4. 2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4월 26일,

김용석 의원(발의의원 9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4.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용석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반려식물을 보급하여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또한 반려식물 보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식물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가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삶의 활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반려식물 보급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반려식물의 정의와 기능

-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고(562만 가구, 28.61%),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반려식물은 적은 비용과 수고로 집안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홀몸 어르신 가구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최근에는 반려식물이 홀몸 어르신의 삶과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¹⁾되면서, 반려식물의 가치와 순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일반적으로 ‘반려식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의미하므로, 안 제2조제8호에서 “반려식물”을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반려식물의 보급 사업

- 안 제20조제1항제8호는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있음.

1) 서울시 보도자료(2018.11.23.)에 따르면,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2천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운영한 결과 우울감·외로움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힘. 즉, 반려식물을 기르기 전과 후의 감정과 에너지 점수가 향상되었고, 우울감과 외로움 해소(각각 92점, 93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서울시는 치유기능 개념의 반려식물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자치 단체가 늘고, 홀몸 어르신도 매년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²⁾

〈반려식물 보급 및 사후관리 체계도〉



-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67,632명(2017년 기준) 중 4천명(약 5.9%)에게 반려식물이 보급되었고, 2019년에는 6천명(서울시 4천명, 자치구 2천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할 예정으로 있어 전체적인 보급 실적이 높지 않은 실정임.
-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제2호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을 근거로 반려식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한 바, 사업시행 3년차에 이르는 현 시점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2) 서울시는 2015년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2017년부터 반려식물 보급을 통한 치유 개념의 도시농업 사업을 실시하였고, 반려식물 보급 사업에 2017년 1억 5천만원(2,000명), 2018년 1억원(2,000명), 2019년 3억원(6,000명)의 예산을 반영함.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어르신 돌봄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홀몸 어르신 위탁기관에서 반려식물을 보급하며, 사업시행자(원예치료사)가 분기 1회 이상 방문해 식물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구조임.

- 또한, 「지방재정법」 3)에 따라 보조금 지출 대상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권장사업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5
----------	-----

발의연월일 : 2019년 3월 14일

발의자 : 김용석, 김상훈, 박순규,
이상훈, 신정호, 이정인,
송아람, 김정환, 추승우,
장상기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반려식물을 보급하여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또한 반려식물 보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반려식물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8.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u></p> <p>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